

## □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

(앞 쪽)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--|
| 기본 사항         |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|  | 사업장명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|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| ( 전자우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화번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담당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|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| 급여 수급자<br>성명       |  | 급여 수급자<br>주민등록번호 |  |
|               | 급여 수급자<br>주소 및 연락처 |  |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| 육아휴직<br>부여기간       |  |                  |  |
| <b>★실제복직일</b> |                    |  | 실제퇴직일<br>(퇴사사유)  |  |
| 고용센터명         | 의왕고용센터             | 팩스번호   | 0508-8230-0306   |  |

위 근로자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년    월    일 복직한 이후,  
 현재(혹은 퇴사일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년    월    일 까지  
 동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※ 본 확인서는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*※ 구비서류: 6개월 급여내역서/재직증명서/복직확인원(복직발령장 등) 중 1개**

※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근로자

(서명 또는 인)

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.

확인자    사업장명

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(지청)장 귀하

## <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안내문>

1.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실제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,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4항에 의거하여, 육아휴직급여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2. 「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」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과 관련된 것으로, 기재 및 확인하여 주신 내용이 허위나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, 고용보험법 제73조, 제74조, 제77조, 제62조제2항 및 제116조제2항 등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. 서류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

1)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\* 「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」의 '**실제 복직일 등**'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.

\* **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"근무"한 후 제출** 바랍니다.

- 부여된 육아휴직 이후 다시 육아휴직 혹은 개인휴직(유.무급 포함) 등을 계속하시거나, 복직 이후 6개월 미만 근로 후 다시 육아휴직 및 개인 휴직 등인 경우, 동 확인서를 보관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(계약만으로 퇴사한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첨부 필수)

\* 육아휴직 중 새로운 사업장으로 '**고용 승계(인수·합병·전근 등)**'된 경우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. (예 : 인수합병에 관한 자료, 인사발령장 등)

2) 근로자 본인의 서명, 사업주의 직인 날인 필수

3) 마지막 회차 지원금을 수령 한 고용센터로 팩스/우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4) 권고사직, 사업장 폐업, 도산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와 임금 체불로 자진 퇴사한 경우 서류 검토 후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### 4. 유의사항

- 확인서의 대상자가 복직 후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,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- 접수된 서류 검토 후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, 사후지급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